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54177(본소), 2019나5418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규태, 김현영, 김민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 선고 2020. 10. 21.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313304(본소), 2018가단 2385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114,734,600원, 피고 C은 9,773,700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8.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4,975,000원, 피고 C에게 12,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은 지연손해금의 연 이율을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D 주식회사에 E 건축공사를 발주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7. 4.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4.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억 원, 공사기간을 2017. 5. 1.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 F의 인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은 2017. 6.경부터 목수로, 피고 C은 2017. 7.12.경부터 철근조립공으로 일하였다.

다. F은 2017.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1. 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형틀)공사(골조형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74,000,000원, 공사기간을 원고의 착공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약정(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 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공사(골조철근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5,000,000원, 공사기간을 원고의 착공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B에게 목공(형틀)공사를, 피고 C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를 각 재하도급하였는데, 그 각 계약금액은 F이 기존에 시공한 해당 공사부분까지포함한 것이었다. 2018. 3.경 피고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더니, 원고는 목공(형틀)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688,734,6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하여 114,734,000원(= 688,734,600원 - 계약금액 574,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철근가공조립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215,273,7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하여 9,773,700원(= 215,273,700원 - 계약금액 205,5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초과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 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은 114,734,000원, 피고 C은 9,773,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F에게 하도급준 공사는 목공, 철근, 비계, 타설공사(골조전체공사)로 피고들이 각 하수급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포함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F이 공사를 수행한 2017. 9.까지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가 목공(형틀)공사나 철근가공조립공사에 지출한 부분이 실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이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따라지급하였고, 목수공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 총액은 368,592,070원, 철근공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 총액은 150,467,6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조회결과상용역공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 총액 94,441,000원 중 일부가 목공(형틀)공사나 철근가공조립공사와 관련되었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금액은 원고가 이 법원에 그 계산 근거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목공(형틀)공사의 노무비 합계 621,757,560원, 철근가공조립공사의 노무비 합계 199,192,000원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갑 제6, 7호증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목공(형틀)공사와 철근가공조립공사에 대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초과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

우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재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원고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8. 1.경 이후 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에게는 162,963,160원(= 2018. 1.분 65,081,560원 + 2018. 2.분 54,051,600원 + 2018. 3.분 43,830,000원), 피고 C에게는 23,850,900원(= 2018. 1.분 12,625,000원 + 2018. 2.분 7,025,900원 + 2018. 3.분 4,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상의 각 계약금액 574,000,000원 및 205,500,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피고들이 F이 공사한 부분까지 승계한다거나 공사대금에 F이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기지급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기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들은 F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F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부로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을 뿐 피고들이 F이 공사한 부분까지 승계하여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8. 1. 8.경 원고의 계산으로는 목공(형틀)공사의 임금으로 525,771,440원이, 철근가공조립공사의 임금으로 191,422,800원이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각 계약금액에서 빼면 피고 B이 받을 남은 대금은 48,228,560원(= 574,000,000원 - 525,771,440원), 피고 C이 받을 남은 대금은 14,077,200원(= 205,500,000원 - 191,422,800원)에 불과한바, 이후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 보면 피고들이 위 각 차액만 받고서 그 각 공사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시공된 공사 중 F이 공사를 그만둔 이후와 같이 어느 부분까지는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넘어 F이 공사한 부분 전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공사 전체를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여 이전에 해당 공정에 관하여 지출된 돈 전부를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각 계약금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162,963,160원, 피고 C에게 23,850,900원이고, F이 공사를 그만둔 후, 즉 2017. 10. 이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은 목공(형틀)공사 관련 481,900,200원, 철근가공조립공사 관련 121,086,900원이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인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0.분 식대비 2,600,000원(피고 B은 2017. 11.분 식대비를 구한다고 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로 볼 때, 그가 구하는 식대비는 2017. 11.에 지급한 2017. 10.분 식대비로 보인다), 2017. 12.분 임금 2,000,000원, 2018. 2.분 임금 4,875,000원, 2018. 3.분 임금 4,500,000원, 2018. 4.분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4,9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에게 2017. 10.분 식대비 2,600,000원(피고 C은 2017. 11.분 식대비를 구한다고 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로 볼 때, 그가 구하는 식대비는 2017. 11.에 지급한 2017. 10.분 식대비로 보인다), 2017.12.분 임금 3,000,000원, 2018. 2.분 임금 4,250,000원, 2018. 3.분 임금 2,750,000원 등 합계 1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 및 식대비로 피고 B에게 14,975,000원, 피고 C에게 12,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2018. 1. 이후 분의 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경 이 사건 각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2018. 1.에 원고와 피고들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2017. 12.분 임금 청구 부분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31. 세금등을 공제한 2017. 12.분 임금으로 피고 B에게 2,915,160원을, 피고 C에게 2,924,0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2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2017. 12.분 노무의 대가가 위 각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시행된 공사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2017. 12.분 임금은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전 제공된 노무라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2017. 12.분 노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식대비 청구 부분

피고들이 2017. 10.분 식대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9, 10호증은 객관적으로 돈이 오간 자료가 아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들이 2017. 10.분 식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시행된 공사 중 일부를 이 사건 각재하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2017. 10.분 식대비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한 식대비라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득을 얻었거나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그러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김석수, 판사 류승우